

신문윤리 50년

제3장

# 언론파동과 언론악법철폐운동

50<sup>th</sup> Anniversary

## 제1절

## 언론윤리위법 제정

## 1. 언론윤리위법 제정 배경

1963년 12월 17일에 출범한 제3공화국은 5·16 군사정권 때 위축되어 있던 언론활동을 회복, 활기를 띠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64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민주주의적인 국정운영의 기본요건 중의 하나인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창달을 위하여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조장하고 언론의 자율화를 촉구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언론계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박 대통령의 주장은 오히려 행정부가 신문윤리위원회 강화책을 공식화한 것으로 언론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 같은 해 3월 정부는 오랫동안 끌어오던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대일 저자세로 일관한 굴욕적인 타결이라 하여 반대하는 학생데모가 격화되고 3월 6일 민정당·삼민회 등 전 야당은 대일 저자세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원내외투쟁을 결의했다. 박 대통령은 5월 23일 광주에서 '정국의 혼란은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동,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일부 학생들의 불법적인 행동 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관용에 연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다음날인 24일부터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 약 5,000명이 데모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사태가 격화되자 정부는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 제1호로 언론·출판의 검열을 실시하는 한편 많은 언론인들을 구속했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편집인협회와 발행인협회는 6월 10일 시국수습선언을 발표 '학생데모의 난동화는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며 또한

그 가치판단에 있어 언론도 절제를 잃은 사례가 없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의 난관 타개를 위해 언론의 기본자세 확립에 정진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자 이 같은 언론계의 언질을 빌미삼아 박 정권은 계엄 하에서 언론통제 계획을 서둘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계 시국수습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특히 언론인들도 그 책임을 느끼고 반성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 시국수습에 관한 교서를 발표하면서 '언론의 과잉자유로 인해 국가안정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언론규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6월 18일,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자유스런 환담에서 '언론이 국가이익 보호에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전제하며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언론정화를 자율적으로 다루고 신문이 협조해 준다면 언론에 관한 새로운 규제법 같은 것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반문을 했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언론을 윤리위원회 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율적으로 규제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는 와중에도 공화당은 7월 1일 '과괴행위를 선동하는 기사제공자, 취재기자, 편집자, 발행인, 방송자를 처벌한다'는 공안보장법을 성안하는 등 언론규제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였다.

## 2. 언론규제입법에 대한 대안 제시

정부 여당의 언론규제방침이 표면화되자 편집인협회 간부들은 7월 14일 의장공관으로 이효상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언론규제 입법의 반대와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다음날인 15일에는 공화당 원내총무단 및 당무위원, 국회 법사위원장과 회동하고 언론규제를 위한 입법의 부당성과 자율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였다.

공화당 측에선 편협의 의견에 찬성의 뜻을 표명, 추후에 언론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대표단은 다시 삼민회 총무단과 민정당 원내총무단을 각각 방문하여 언론규제입법의 부당함을 지적,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끝에 언론규제입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를 뒤인 17일에는 최석채 부회장이 이수영 공보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여야협상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7월 22일에는 신문회관에서 신문발행인협회, 통신협회, 신문편집인협회, 신문윤리위원회, IPI한국위원회 등 언론단체 대표자회의를 소집, 언론의 자율규제문제를 논의한 끝에 각 단체에서 2인씩의 대표와 신문연구소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 언론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4일 소집된 첫 언론규제대책위원회에서는 언론자율규제방안을 논의한 끝에 현 신문윤리위원회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고 윤리위원회의 '기구설치의 자율성'과 '결정사항 실행의 자율성' 등에 관한 안을 입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여야협상에 임하는 삼민회는 7월 25일 언론규제는 첫째, 자율적이어야 하며 둘째, 신문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셋째,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각 단체가 준수토록 법제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도 이에 찬의를 표명했으나 민정당은 자율적이건 타율적이건 어떠한 언론규제 입법에도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그러나 23일부터 진행된 여야 시국수습회의는 언론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다음과 같은 7개항의 언론규제내용에 합의했음을 발표하였다.

여야협상으로 합의된 언론규제내용

1. 언론의 자율적 규제강화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신문·통신·잡지·방송 등 언론기관의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윤리위원회의 회원

이 되게 한다.

3. 윤리요강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한다.
4. 윤리위원회는 상설집행기구로 심의회를 두며 그 구성은 언론인이 과반수가 되며 의장은 비언론인이 된다.
5. 심의회는 문제된 언론내용을 분석 판정하고 모든 언론기관이 공표토록 의무화한다.
6. 윤리회의 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와 중대한 윤리요강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언론 소관 장관이 할 수 있고 판정에 불복이 있는 피해자는 법원에 소구할 수 있다.
7. 판정에 불복할 때의 제재방법을 강구한다.

이와 같은 여야 협상회의사항이 발표되자 언론계는 일제히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규제대책위는 제1분과위, 제2분과위에서 마련한 신문윤리위원회 강화방안(기구설치의 자율성 및 결정사항의 자율성)을 검토한 끝에 7월 30일, '타율적 규제를 배제하고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율규제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언론규제대책위의 자율규제강화안

1. 윤리위원회 구성에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2. 정부나 관공기관에서 윤리위원회의 권위와 기능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해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지난 3년 동안에 단 2건만 있었다는 사실).
3. 당국은 의당 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성질의 필화혐의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입건 구속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선용치 못하여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율적 규제기관을 존중하는 기풍을 멸살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일부 언론기관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치 않고 이를 경시한 사례가 있었다.
5. 재정적으로 빈약하여 윤리위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또 윤리위의 경비를 신문사로부터 부담금 형식으로 각출했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자율적 규제의 개념을 첫째, 윤리기구 설치의 자율성. 둘째, 윤리기구 운영의 자율성. 셋째, 윤리위 결정사항 실행의 자율성을 재확인하고 다음의 5개 방안을 채택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언론규제대책위의 윤리위 강화방안

1.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신문인 대 비신문인의 비율은 현재와 같이 신문인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구성은 언론인 7인(기자 1인, 통신발행인 1인 등), 비언론인 6인(국회의원 2인 등) 포함 13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에 심의기구를 상설, 매일 모든 신문, 통신지면을 분석검토하여 자율규제를 도모한다.
3. 정부는 필화협의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4.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천 보장하기 위해 강제성을 띤 제재규정을 설치해야 한다.
5. 신문윤리위원회의 경비는 발행인협회, 신문편집인협회, 통신협회 대표로 구성하는 후원기구에서 자율성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담당한다. 또한 신문윤리위원회에 지원하는 신문·통신사의 찬조금은 발행인협회와 통신협회에서 일괄 취급한다.

### 3. 언론윤리위법의 날치기 통과

앞서 언급한 언론규제대책위원회의 윤리위 강화방안은 여야 간에 진행 중인 언론규제입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화당과 정부당국은 언론규제대책위원회의 대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계의 입법반대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여야 협상합의를 빙자하여 전문 20조의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7월 30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제출한 법안은 그동안 여야협상에서 마련한 언론의 자

체규제강화대책 7개항과는 크게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은 위헌적이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7월 31일, 언론규제대책위원회는 공화당이 제안한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의 내용은 언론의 자율적 규제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며 언론자유와 본질적 내용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완전한 타율적 규제라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배이며 또한 사법권의 범위를 침해할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나아가 언론계는 그동안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한 자아비판과 언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의의 일단으로서 7월 30일에 채택 발표한 언론자율규제 보장에 관한 방안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처사를 규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규제대책위원회는 당국의 그 같은 행위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민주적 발전을 회구하는 건전한 사회여론의 준엄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면 공화당은 즉각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국회의장에게 공개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자율규제방안(신문윤리위원회 강화방안)을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공화당 원내총무단, 민정당 원내총무단, 삼민회 총무단 및 공보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8월 1일에는 동 법안의 폐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반대했던 민정당도 악법제정반대 성명과 함께 동 법안의 철회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언론계, 법조계, 민정당 등의 반대와 폐기요청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야간국회는 재석 149명 중 가 90표, 부 0표, 기권 53표로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송한 법안을 접수한 정부는 8월 5일 정식으로 공포하고 즉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언론계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국회에서 전격 처리된 것은 정부여당의 강행방침도 있었지만 삼민회 의원들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이 비단 언론계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들의 반발과 규탄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당시 신문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첫째, 이 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다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등이 있어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 등으로 언론활동을 규제할 법령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따로 만들어 윤리위원회와 심의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강령의 제정, 판정공표문의 게재 및 방송 등의 일정사항을 명하거나 또는 금하고 있는 것은 정부비판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위헌사항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헌법 제2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법은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기관에 의해 법률 아닌 윤리강령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동법 제13조 4항은 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의 일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심의회에 부여하고 그 심의회의 판단에 의하여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이라는 중대한 제재를 받게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법과 윤리를 혼동하는 모순을 지닌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법이다.

그러나 이미 법안의 발효를 선언한 정부당국에서는 윤리위의 의견을 무시하였으며, 법안 개정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윤리위를 비롯한 언론단체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언론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선언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일치단결하여 투쟁하기로 했다. 그리고 악법 철폐를 위해 신문윤리위를 필두로 모든 언론인들이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 제2절

# 언론악법철폐운동 전개

### 1. 악법철폐투쟁위원회 결성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철폐를 위해 무한투쟁을 선언한 언론규제대책위원회는 이 법을 위헌적인 악법으로 규정, 본격적인 철폐운동에 나섰다. 이에 놀란 공보당국은 법의 시행에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국무성은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도 민주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언론규제철폐위원회로 발족했던 기구를 8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법의 시행을 공포하게 되자 언론법철폐투쟁위원회(이하 투위)로 명칭을 바꾸었다. 투위에 참가한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다.

#### 언론법철폐투쟁위원회 참가 언론인 명단

- 위원장 : 유봉영(조선일보 주필)
- 부위원장 : 고재욱(동아일보 주필·편집인협회장), 홍종인(신문연구소장), 김남중(전남일보 사장·발행인협회 이사)
- 실행위원 : 방우영(조선일보 사장·발행인협회 이사), 김종규(한국일보 사장·발행인협회 이사), 최석채(조선일보 논설위원·편집인협회 부회장), 정현준(한국일보 논설위원·편집인협회 심사위원장), 최기섭(동양통신 이사·통신협회 이사장), 한격만(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변호사협회 대표), 김광섭(합동통신 편집국장·신문윤리위원), 이환의(경향신문 기자), 이웅희(동아일보 기자), 이수열(라디오서울), 김규

환(동양통신 편집부국장 · IPI한국위원회 사무국장), 김형익(의사시보 사장 · 주간 신문협회 대표), 김명엽(잡지협회 대표)

-총무간사: 박홍서(시사통신 편집국장 · 편집인협회 사무국장)

-선전간사: 엄기형(신문윤리위 사무국장)

-추가 실행위원: 3차 회의-조규호(서울신문 편집국장), 강영수(대한일보 주필), 장기봉(동화통신 편집국장), 정태연(한국일보 기자), 윤 박(문화방송 기자), 송영신(동양통신 기자)/ 4차 회의-기자단공동투쟁협의회 대표인 김영수(동아일보 기자), 송기오(조선일보 기자)

조직을 정비한 투위는 투쟁방안의 하나로 첫째, 8월 10일 전국언론인대회를 개최할 것. 둘째, 기자단체와의 횡적 연락을 긴밀히 할 것. 셋째, 언론윤리위법 철폐요구 성명서를 발표할 것. 넷째, 발행인협회의 언론윤리위(이하 관제윤리위라 함) 소집 저지 등을 결의했다.

한편 국회를 비롯한 정부의 각 부처 출입기자단은 정부와의 모든 협조 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24시간 취재 중지를 결행했다. 전국 30여 지구의 일선 기자단도 투위 결의를 지지했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2. 전국언론인대회 개최

투위의 결정에 따라 전국언론인대회는 8월 10일 신문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신문 · 통신 · 방송 · 주간지 등 각계의 언론인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관제 윤리위법의 저지운동 경위 보고와 실행위원 총 23명이 선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타율적인 관제 윤리위 구성에 협력하는 언론인을 사이버 언론인으로 규정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대통령,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전국언론인대회에서 채택한 선언문, 결의문, 대통령께 보내는 건의문 등은 다음과 같다.

### 전국언론인대회 선언문

자유는 천부의 인권이요 특히 언론표현의 자유는 「제1의 자유」라고 일컫는다. 유구한 인류사의 조류가 바로 인간의 자유쟁취를 그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은즉 그 아무도 이 방향을 역류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공산주의와 혈투를 거듭함도 또한 언론의 자유를 선두로 한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은즉 그 아무도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이민족의 압제 하에 있을 때도 언론은 민족을 대변하고 자유를 지향하여 사력을 다하였고, 그 압제로부터 해방된 뒤로는 국정에 대한 비판의 민성을 두려워하는 집권자들이 때로 언론탄압을 획책하였으나 그때마다 언론은 이를 분쇄함에 과감하였다.

이제 또 다시 집권자들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우리 언론계가 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불퇴전의 반대투쟁을 전개함은 이 투쟁이 언론에 종사하는 자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손만대에 물려줄 전 국민의 기본권리 수호를 위함이요, 따라서 이 투쟁이 언론에 종사하는 자만의 분기가 아니라 이것을 응시하고 뜨거운 지지를 보내는 온 겨레의 소리 없는 함성을 등에 진 투쟁임을 명백히 해두는 바이다.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언론의 윤리를 강조한다 하면서 윤리의 규범을 넘어서 법의 규범으로써 언론을 규제하려 하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이라. 「언론의 자율규제를 강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법이 진실로 자율을 강화하려는 언론계의 맹렬한 반대를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자가당착인가. 언론의 자유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하나 그것이 집권자들의 실정 은폐의 방패로 악용될 수 없다는 데에는 어떤 궤변도 용납될 여지가 없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꺾어서까지 이 악법을 강행하려는 데에는 입법의 당사자들조차 내심에 부끄러운 바 있을 것이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언론에도 제약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기에 언론이 일반법에 저촉되었을 때 그 책임을 면해본 바도 없거니와 언론의 책임을 스스로 강조하여 이미 「신문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자율강화를 기약하고 있다. 여기에 명분없는 악법으로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삼고 자유를 질식케 하려는 이 책동이 계속되는 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죄과는 길이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한국의 언론인은 이제 의연히 쟁기하였다. 우리의 행동에 대의가 있으며 우리는 사필귀정을 확신하는 바다.

1964년 8월 10일  
전국언론인대회

### 전국언론인대회 결의문

한국의 신문·통신·방송·잡지 등에 종사하는 전체 언론인을 대표한 우리 언론인대회는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악법임을 지적하고 이 법 시행에 일체의 협력을 거부키로 한 지난 8월 3일자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 확인하며 아울러 이 법 철폐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8월 5일자 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의 성명을 전 언론인의 이름으로 재확인하면서 이 악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그 목적 관철시까지 어떠한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굳은 결속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적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전국적 규모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는 바이며 우선 제1단계 투쟁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의 발족과 구성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이에 협력하지 않으며 심의회에 대한 대표의 파견을 거부한다.
2. 우리는 언론윤리위원회법 부칙에 규정된 첫 회합의 소집이 신문발행인협회에서 거부되어야 할 것을 다짐한다.
3.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위배하여 타율적인 관제윤리위원회의 성립에 협력한 자를 사이비 언론인으로 규정한다.
4.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심의회 대표 파견을 거부하도록 그들의 민주주의적 양식에 호소한다.
5. 우리는 교육계와 종교계 인사들에게 언론윤리위원회의 심의회에 그 아무도 참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6. 우리는 이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정부의 일방적 선정성을 띤 보도는 일절 이를 거부한다.
7. 우리는 각 분야별로 이미 자율적으로 제정 보유하고 있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요강 등을 더욱 충실히 준수하며 특히 신문·통신은 현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위에 대하여 아무런 동요가 없을 것을 확인하고 7월 30일 언론관계 5개 단체 대표자회의가 채택한 신문윤리위원회 강화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8. 우리는 이 투쟁과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형식의 장해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으로 대처한다.
9. 우리는 투쟁위원회의 지휘통제아래 악법철폐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을 사태의 진전에 따라 적의한 시기와 대상을 택해서 어김없이 실행한다.

10. 우리는 입법부가 이 악법철폐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64년 8월 10일  
전국언론인대회

### 대통령께 보내는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전국 일간신문·통신·방송·정기간행물에 종사하는 우리 언론인 일동은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동월 5일 정부가 공포 시행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우리나라 언론의 육성과 나아가서는 한국의 민주발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이미 우리들이 성명서 등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 몇 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위헌적인 요소와 비민주적인 요소를 그 법 내용 자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이 법을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8조 1항의 규정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의 기본정신에 원천적으로 저촉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제32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조항에도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것입니다. 또 헌법 제2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윤리위원회법」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 아닌 자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것은 사법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위헌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주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고의로 폐기하고 본회의에서 정략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회정치의 규범에 심히 위배되는 반민주적 입법과정을 통하여였습니다.

민주주의 근원인 언론과 관련되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기회와 방법을

의식적으로 봉쇄한 것도 비민주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 법은 입법기능의 한계에 대한 극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이론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개념과 도덕률 내지는 사회윤리의 개념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법은 권력구조에 의해서 강제집행되는 것이고 도덕이나 사회윤리는 법의 영역 외에서 개인이나 사회의 윤리의식의 자각으로써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그 법의 명칭 자체부터가 모순되는 것이며 언론윤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언론기관이 법의 영역 외에서 스스로가 작성한 명령이나 기준 등을 윤리규범으로 삼아서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어떤 처벌을 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언론윤리위원회법」은 피로써 공산침략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모처럼 이것을 발전시킬 것을 굳게 결의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심히 추락시키는 수치스러운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명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굳은 결의와 단결로써 동법의 철폐를 요청하는 우리 전 언론인 및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충정을 양찰하시와 조속한 시일 내에 동법이 폐지되고 전 언론인대표가 합의하에 마련한 기존 「한국신문윤리위」 보장에 관한 방책을 채택해 주시옵기 바라오며 동법으로 인한 정부·여당과 언론계와의 긴장 및 대립관계를 지양하여 다같이 합심 국리민복을 위하여 진력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1964년 8월 10일  
전국언론인대회

### 3. 기자협회 설립과 투쟁 강화

전국언론인대회에 앞서 언론계는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을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 시행에 대한 일체의 협력을 거부, 전 국민과 더불어 폐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거듭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법 시행을 당연시하였다.

이에 국회, 청와대, 중앙청, 법조, 경제부처, 보사부 출입기자단은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편협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의했으며 국회, 중앙청 두 기자단은 이 법 폐기운동의 제1단계로 8월 5일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취재 및 보도를 일체 거부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정부에 즉시 이 법을 폐기하도록 건의했다.

이어 사회부장회의, 사진부장회의가 이를 뒷받침했고 외무부, 국방부, 문교부, 교통부, 체신부, 서울특별시 출입기자단이 잇따라 호응했으며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수원, 원주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취재일선기자들도 취재거부를 시한부로 들고 나왔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대표 50여 명은 8월 5일 신문회관에 모여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를 구성, 동법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국회출입기자단이 주동이 되어 기자단회의를 열고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 저지를 위한 일선기자단 공동투쟁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대표 6명을 선임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기자협회의 태동을 가져온 기초가 되었다.

기자단공동투쟁협의회는 그 첫 모임을 8월 8일 신문회관에서 가졌는데, 이 모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처 13개 출입기자단대표 30여 명이 참석하여 언론계 5개 단체대표로 구성된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와 공동으로 적극 투쟁한다는 것과 기자단 공동투쟁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자협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각 기자단의 결의에 의해 기자단 공동투쟁협의회를 한국기자협회 창립준비위원회로 개편하고 정치부 대표 김영수, 송기오, 경제부 대표 송두빈, 사회부 대표 김천수, 편집부 대표 최근, 사진부 대표 이명동 기자 등이 추진멤버가 되었다. 발행인들도 기협 발족의 움직임을 알았다 해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었고 당시 기자들이 언론투쟁의 선봉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전체 언론을 위해서라도 기자협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기자협회 추진멤버들은 시종 극비리에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는 5·16 이듬해인 1962년 기자협회를 창립하려다가 실패한 쓰라린 경험 때문이었다. 그런데 준비 작업을 거의 끝내고 막상 창립할 단계가 되자 우선 창립총

회의 집행부를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준비위원들은 집행부의 구성에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 기자협회 설립 추진과 실패

1950년대 설립을 추진하다가 언론사 사주의 반대로 실패했던 기자협회가 다시 설립을 추진한 것은 5·16 군사정권이 쿠데타의 여진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난 뒤였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쿠데타세력의 기자들에 대한 푸대접과 여전한 박봉으로부터의 고통 때문이었다.

쿠데타 발발 후 국회의사당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들어섬에 따라 기자실을 잃은 국회 출입기자들은 임시로 외무부 출입기자실에 모여들었다. 몇 달 뒤 최고회의가 퇴계로 해군본부로 옮기고 나서야 기자실을 하나 내주었는데, 천장이 뚫려 자동차 먼지가 그대로 쏟아져내리는 가건물이었다. 그후 최고회의는 다시 경제기획원자리로 옮겼다. 그런데 역시 기자실은 가건물이었다. 그나마 가건물 면회실의 한켠에 칸막이를 해놓고 그곳을 쓰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최고회의의 출입기자들은 재건국민운동본부 뒤편 휴게실에 모여 매일 연거푸 회의를 거듭했다. “기자들에 대해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상태에서 취재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이 같은 기자 푸대접 상황에서 박봉의 생활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0대 1의 관문을 뚫고 견습기자로 들어와 6개월 내지 1년의 견습기간을 끝낸 기자의 월급이 산업은행 사환의 월급보다 적었다.

서서히 월급문제가 기자들의 권익옹호 차원에서 재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사 단위로 봉급투쟁할 엄두는 못내고 출입처별로 거론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회의의 출입기자단이 추진세력이 되어 (가칭)한국신문기자협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최고회의의 출입기자들이 주축이 된 것은 과거 국회 출입기자들이 최고회의의 출입을 하게 된 사람도 많았고, 또 기자실 문제로 군정 하에서도 의견을 관철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기자들의 처우문제 등을 최고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요인이 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최고회의의 출입기자들은 당시 최고회의의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있어 동회의의 공문으로 각 출입기자단에 소집을 통보했다.

비공식 제1차 회의가 62년 2월 6일 한국회관에서 열렸다. 최고회의, 중앙청, 외무부, 내무부, 재건국민운동본부 등 5개 출입처 대표가 출석하여 신문기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민주언론 창달·국제교류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자협회를 만든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위해 출입처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최고회의의 기자대표 박지용, 재건운동본부 기자대표 이상우가 회의를 주도했다.

기자협회 창립을 위한 제1차 공식회의는 1962년 3월 8일 오후 2시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치, 경제, 사회부의 출입기자대표가 참석하여 기자협회 결성에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하였고, 대표들은 각 출입처에 돌아가 이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출입처기자단의 공식태도를 결정하여 다음 회의에 가지고 나올 것을 결정했다(참석은 최고회의, 중앙청, 내무부, 법조, 보사부, 농림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재건국민운동본부 등 10개 출입기자 대표).

제2차 공식회의는 3월 17일 국민운동회의실에서 열려 각 대표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출입처기자단의 공식태도를 전달하고 발기준비위원회 구성에 서명하는 한편 소위를 구성, 의안작성을 일임했다. 소위는 최고회의, 중앙청, 내무부, 보사부, 재건운동본부의 5개 출입처 대표가 선임되었다. 3월 30일 제3차 공식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강령을 채택했다.

1. 우리는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힘쓴다.
2. 우리는 서로의 사회적·경제적 권익옹호를 위해 힘을 뭉친다.
3. 우리는 국제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

제4차 공식회의인 발기준비위원회가 4월 11일 재건운동본부회의실에서 열려, △창립총회를 4월 21일로 결정하고 △선언문, 강령, 규약, 결의문(거의 이상우가 초안하고 정지용이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후에 창립된 기협에서 그대로 골자가 되었다) 등의 안건을 채택하고 △대회소집 절차 및 진행은 소위에 일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21일에 열기로 한 창립총회는 장소사용 허가관계로 24일로 연기되었다. 그리고 막상 당일엔 집회허가를 내준 당국은 오전 중 집회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와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기협 창립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시 기자들의 기협 창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정보기관에서는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의 고위층도 그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제지나 방해를 한 일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미 양해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당시 오재경 공보부 장관에게 모 신문사 발행인이 전화를 걸어 “기자협회가 발족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터이니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해 오 장관이 정보부 언론고문에게 연락, 방침을 바꾼 것이었다고 한다. 창립총회가 유산되자 일부 강경파 기자들은 집회허가가 나지 않으면 각 출입처기자실 안에서라도 집회를 강행하거나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신문사 단위로 통과시켜 창립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일단 때를 기다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3~4개월이 지나 군사정부 측에서 기자협회를 창립해도 좋다는 의견을 비공식으로 전해왔으나 그런 권고에 의해 기자협회를 발족시키는 것은 장차 어용단체화하거나 어떤 형태이든 나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민정이양 후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기자협회 40년사에서 발췌)

이렇게 하여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5일 만에, 그리고 일선기자단 공동투쟁협의회가 발족한 지 10일 만에 한국기자협회는 창립을 보게 되었다. 1964년 8월 17일 기자협회 창립발기를 추진한 19개사는 다음과 같다.

<p><b>기자협회 창립발기 참가회사</b></p> <p>● 경향신문, 대한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양통신, 동화통신, 합동통신, 동아방송, 라디오 서울, 문화방송, 산업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코리아 리퍼블릭, 코리아 타임스, 경제통신, 시사통신, 무역통신.</p>	<p>● 경향신문, 대한일보, 동아일보</p>
--	---------------------------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마침내 출범한 기자협회는 서울시내에 있는 19개 신문, 통신, 방송사 기자 200여 명과 홍종인 등 언론계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수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창립총회를 가졌다. 준비위원회의 치밀한 계획대로 대회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회장에 이강현(동아일보·지방부차

장), 부회장에 송두빈(동화통신·경제부차장) 유승범(합동통신·정치부차장) 조동오(한국일보·사회부차장) 최근영(대한일보·편집부차장)을, 감사에 서기원(서울경제·취재부차장) 박근숙(MBC 정치부차장) 등을 만장일치로 뽑았다.

총회는 또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강령·규약 및 선언문·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령은 이상우 기자 등이 기초한 자질향상, 언론자유수호, 권익옹호 등 3개항에다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추가한 국제교류강화 등 4개 항목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소위 기협의 4대강령이 되었다.

이와 함께 기자협회는 ‘반세기간의 언론사를 통해 우리들은 항일과 반독재의 제1선에서 싸워왔지만 서로의 유대와 단결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체는 가져보지 못했다. 항일과 반독재의 피나는 투쟁사를 거쳐 이제 우리는 언론자유 수호와 조국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우리의 용기와 지혜를 집중한다’는 선언문과 ‘우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채택한 한국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앞으로 그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자체규율을 높일 것이고 비민주적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며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 이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언문과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협회 선언문**

우리들 전국의 신문·통신·방송의 일선기자들은 오늘 한국기자협회를 창립한다. 반세기간의 언론사를 통해 우리들은 항일과 반독재의 제1선에서 싸워왔지만 서로의 유대와 단결을 위한 항구적인 조직체를 가져보지는 못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우리들은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해 보지 못했다.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 그리고 우리들 자체 내의 윤리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결코 완벽을 기했다고는 보지 않는 바이다.

항일과 반독재의 피나는 투쟁사를 거쳐 이제 우리는 언론자유 수호와 조국이 요구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우리의 용기와 지혜를 집중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자

신의 인간적인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는 현실적인 요청이요, 역사적인 필연이다. 정의와 책임에 바탕을 둔 우리들의 단결된 힘은 어떠한 권력, 어떠한 압력에도 굴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 기자협회 결의문

1. 우리 기자협회는 오늘 우람찬 발족에 즈음하여 우리들 마음깊이 우리나라의 결의를 다함께 다진다.
2. 우리는 전국기자들의 단결이 우리들 기자들의 염원이었으며 한국 언론의 숙제였음을 명심하여 공동운명의 대도에서 결속한다.
3. 우리는 스스로의 자질향상에 힘을 기울이며 기자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제조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천명한다.
4. 우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채택한 한국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앞으로 그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자체규율을 높일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비민주적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며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 이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기자협회의 발족은 기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당면한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의 선봉적 역할을 하는데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기협 탄생 후 기자협회 대표들도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고 전국 기자들의 통일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언론계와 정부의 대립투쟁 와중에서도 신문윤리위원회는 자율적인 기구와 권한의 보장을 위하여 ①신문·통신의 지면을 매일 검토하는 심의실의 신설 ②신문윤리위원회에 입법부대표 2명(여야 국회의원 1명씩)을 참가케 하고 ③제재규정을 강화하여 기간단체에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규정한 회칙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3일에는 신문편집인협회, 25일에는 통신협회의 인준을 얻어 회칙개정을 의결하기도 했다.

## 제3절

# 언론윤리위법 시행과 저항

### 1. 성명서 투쟁 전개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8월 17일 공보부 장관은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즈음하여’라는 제하에 ‘동법 제정의 취지, 목적 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그 법이 언론자유를 억제하는 것처럼 언론계는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현혹되지 말고 법 시행에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인대회 결의대로 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함으로써 보도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담화문 내용을 서울신문에 유료광고로 게재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공보부 장관의 담화 보도거부를 계기로, 8월 17일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코리아 타임스, 서울신문 등은 언론인대회결의 10항 중 제6항 ‘우리는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정부의 일방적 선전성을 띤 보도는 일체 이를 거부한다’는 정부의 PR한계를 준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투위에서 이탈을 선언했다.

이어 18일에는 코리언 리퍼플릭, 일요신문, 서울문화방송이 이탈했다. 일부 친여계 신문들이 투위대열에서 이탈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19일 신문발행인협회(회장 김여원 서울신문 사장) 이사회는 ‘8월 28일까지 정부서 공포한 언론윤리위원회법 부칙에 의거 언론윤리위원회 소집 여부를 서면결의키로’ 의결했다. 이로부터 언론법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부에 협력하는 일부 발행인과 이에 반대하는 투위 간의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8월 20일 신문편집인협회는 19일의 발행인협회 이사회 결의에 유감을 표명

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성명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한국신문발행인협회의 공고한 신념과 언론단체로서의 양식을 조금도 의심하려 하지 않으나 19일 이사회에서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 소집 여부에 관한 서면결의를 결정 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지난 10일의 전국언론인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제2항의 '우리는 언론 윤리위원회법 부칙에 규정한 첫 회합의 소집이 신문발행인협회에서 거부되어야 할 것을 다짐한다'는 맹약에 비추어 당연히 이사회 자체에서 관제 윤리위 소집이 일축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발행인협회가 더욱 신중을 기하려는 진의에서 나왔을 뿐 악법반대의 투지에 추호의 영향도 없음을 확신하고자 하며 신문 발행인들이 한국 언론사상 미증유의 중대한 관두에 선 이 마당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결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충심으로 기대해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발행인들에 대한 정부의 압력과 공작은 가중되기만 했다. 이에 발행인협회의 서면결의를 하루 앞둔 27일 신문편집인협회는 '첫째, 지난 20일 협회가 발표한 성명을 재강조하면서 기어코 관제윤리위원회의 소집이 발행인협회에 의해서 거부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둘째, 발행인들은 어떠한 형태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사회지도성을 인식하여 신문발행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해줄 것을 바란다. 셋째, 우리 편집인들은 발행인들에 의한 결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층 단결을 굳게 하면서 끝까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8월 28일 발행인협회의 서면결의를 종합한 결과 찬성 21, 반대 4(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기권 1(대한일보)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9월 10일 관제 윤리위원회 소집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대비하

여 서울신문 사옥에 사무실과 사무요원까지 미리 확보하고 있었다.

발행인협회의 서면결의 결과가 알려지자 언론계는 물론, 국민의 맹렬한 비난이 이어졌다. 기자협회는 8월 29일 그 동안의 정부공작 상황과 일부 발행인의 처사를 폭로, 비판하는 거센 성명을 발표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고 신문편집인협회도 31일 발행인협회가 관제 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의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의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집인협회 성명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8월 31일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관제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의 하였음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굳은 결의를 표명한다.

1. 우리는 일부 발행인들이 본의가 아니면서도 관제윤리위원회 소집에 찬성한 고충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악법반대투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케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관제 윤리위원회 소집을 반대한 신문사에 대해 오늘 하오에 나타난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가 소위 특혜와 협조 거부라는 이름 아래 관공서와 공무원의 신문구독 중지 종용 등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처사는 일찍이 일제하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것으로 이러한 보복조치를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3. 우리 언론인 일동은 악법반대와 민주언론의 대의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엄숙히 다짐하면서 아울러 국민 제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 있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 기자협회 성명서

1. 우리는 자유를 지키려는 전체 언론인의 간곡한 호소와 경고를 외면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제언론윤리위원회 구성에 일부 몰지각한 발행인들이 송고한 언론인의 지조를 자기의 사소한 이해와 '바티'하려는 처사를 개탄하는 바이다.
2. 악법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정부는 갖가지 위협과 회유책으로 일부 발행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발행인들의 뒤에는 경찰간부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는 입수하고 있다.
3. 악법의 철폐에는 끝까지 행동을 같이 하겠다던 모 일간지의 사주는 현 관직을 남용하여 발행인들이 언론윤리위원회 구성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그 자신의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낸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4. 우리는 8월 28일에 기어코 자행된 발협외의 비민주적인 서면결의가 이루어지기 전 26일 밤 대전에서 가졌던 일부 발행인의 예비회합 또 8월 27일과 28일 서울 서린호텔과 요정 「장원」에서의 일부 지방 발행인 및 정부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무슨 목적이 오고갔는가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
5. 특히 일부 발행인들이 정부에 대하여 은행용자와 시설확충보조를 교섭하면서 언론윤리위원회법 중 발행인 처벌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자신들의 구명책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일선기자들은 분격하고 있는 것이다.
6.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와 몰지각한 언론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행위가 후일의 한국언론사에 똑똑히 적혀지리라는 것을 들어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다.
7. 끝으로 우리 젊은 일선기자들은 이 나라 민주언론의 전진을 가로막는 어떠한 압제와도 싸울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는 바이다.

한편, 기자협회의 성명이 발표되자 언론인들은 물론 국민들은 크게 격분했다. 재야지도자들은 일부 발행인의 처사에 크게 반발, 언론자유수호국민대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언론투쟁대열에서 이탈한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코리아타임스 기자들은 '투쟁대열에서 이탈한 것은 발행인의 일방적 처사'라며 계속 투쟁대열에 참가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조선일보 기자들은 총회를 개최하고 '발행인이 정부압력에 굴복할 경우, 총파업과 총사퇴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시내 주요대학과 10개 종합대학신문들도 악법철폐투쟁에 참가할 뜻을 밝혔다. 투위는 기자들에게 가해질 압력을 고려, 발행인의 이탈은 개인자격으로 인정하며 서면결의에 찬성한 신문사 소속 편집인과 기사는 구속받지 말고 투쟁대열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기로 했다.

투위는 정부의 압력으로 일부 신문·방송이 이탈함에 따라 투위의 회의소집이 불가능해지자 정·부위원장과 최석채(편집대표), 김규환(IPI대표), 김광섭(서울시내 편집국장 대표), 이강현(기자협회 대표), 이환의, 박홍서(간사), 엄기형(신문윤리위 사무국장) 등 11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 투위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상임위원회가 지휘본부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상임위는 매일 신문윤리위원회 회의실에 모여 투쟁방법을 숙의했고 이때부터 더욱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 2. 정부의 보복조치 강행

발행인협회의 서면결의 때 반대한 4개 신문사가 확인되자 정부는 8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에 반대한 4개 언론기관 및 관련 언론인들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특혜 또는 협조를 배제하는 다음과 같은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첫째, 정부기관의 윤리위법 반대 신문에 대한 구독 중지. 둘째, 정부광고의 의뢰 중지. 셋째, 신문용지 배급과 은행용자의 제한. 넷째, 해외특과원에 대한 환금조치 금지. 다섯째, 신문의 수송 기피 방조. 여섯째, 출입기자의 관청출입 금지 방조 및 취재원 봉쇄. 일곱째, 야간통행증 특수지역의 출입금지 또는 기피. 여덟째, 신문인들의 사생활상의 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원 배치. 아홉째, 언론법 반대사에 대한 악선전. 열째, 정간 또는 폐간 조치 등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조치에 불만을 품은 이수영 공보부 장관은 9월 2일 사표를 제출했다. 후임에 홍종철 장관이 임명되었다.

한편, 정부의 보복 내용이 발표되자 신문편집인협회는 즉각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없었던 언론탄압이라고 지적,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등 4개사 편집국장은 9월 1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 4개 신문사 공동성명서

소위 언론윤리위원회법의 강행을 저지하려는 열화와 같은 대다수 언론인의 총의를 무시하고 동 관제윤리위원회 소집을 위한 발행인협회의 찬·반 서면결의를 강요함에 있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4개사에 대하여 정부는 본격적인 보복조치를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악랄한 수법은 일찍이 일제 때에도 보지 못하였던 터로 정부 산하 각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신문 불매명령과 아울러 제지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신문용지의 불법적인 가격인상 강요로 물가고를 유발시키게 하는 부당한 처사 그리고 해외특파원들에 대한 외환지불 중지 등 그 천인공노할 비인도적인 조치는 이미 가공할 언론탄압일 뿐 아니라 위정당국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노정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자유스럽고 평화로운 언론의 창달을 위해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한국기자협회의 정열적인 투쟁에 더 큰 기대를 걸면서 일사불란 악법철폐를 위하여 끝까지 감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이에 만천하 애국동포 제위의 가일층의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어 9월 3일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4개사와 기관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대한일보 등 5개 신문사 명의로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5개 신문사 공동선언문

국민은 그 누구나 「악법」이라고 확신하는 제도와 법률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또한 악법에 협력하지 않아도 좋은 자유를 가졌다.

우리 5개 일간신문사는 그와 같은 민주원리와 자유언론인으로서의 신념에 입각하여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법에 의한 첫 회합 '소집여부'를 묻는 신문발행인협회의 서면결의에 반대 또는 기권으로 회원사 자격에 의한 정당한 권리와 양심의 명하는 바를 실행하였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주정치 하에서 일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보복조치'를 우리에게 가하기 시작하였다. 무엇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어디서 비롯된 보복감정인지 우리는 망연자실할 뿐이다.

발행인협회라는 한 임의단체의 결의에조차 자유로운 찬부의 의사발표를 못한다고 하면 언론의 자유는 고사하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도 정부의 전제하에 관제되고 있는 독재정치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 것인가.

우리는 이미 5개사의 좌표를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을 비통히 여기면서 이성을 잃은 정부 처사가 시정될 때까지 여하한 시련에도 대응할 굳은 결의를 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양성·음성의 갖은 악랄한 박해를 무릅쓰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명맥을 유지하는 필사적인 저항을 전개할 것을 전사원의 이름으로, 또한 공동의 운명아래 우리와 투쟁을 같이하는 각 언론단체와 함께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는 전체 독자와 더불어 만천하에 선언하면서 최후까지 굽히지 않을 것을 성스러운 우리의 민주역사 앞에 엄숙히 서약하는 바이다.

### 3. 정부조치에 대한 반대투쟁 전개

투위는 9월 1일 투위 대표 유봉영, 신문편집인협회 대표 고재욱, 기자협회 대표 이강현의 공동명의로 언론윤리위원회법 폐기 요청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전국 신문인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었다.

청원서의 요지는 ①동법은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내용이다 ②동법은 자율적 규제 아닌 타율적 규제이다 ③동법은 사법권의 침해요소가 있다 ④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문윤리위원회의 보강조치를 받아들이고 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한편 전국 언론인들의 봉기와 때를 같이하여 정부의 보복조치에 분격할 변호사협회 회장 이내린, 종교계 대표 함석헌, 지명관, 법조인 노진설, 교육계 대표 장이욱 등이 주도하는 자유언론수호국민대회 발기준비위원회는 9월 4일 사상계사에서 확대간담회를 갖고, 투위를 대표하여 참가한 투위 간사 엄기형으로부터 언론계의 악법철폐투쟁 경과 및 상황보고를 듣고 자유언론수호투쟁의 기본방향을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전면 폐지에 두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정부는 보복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과 관제윤리위원회 소집에 찬성한 21개 신문사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정부의 보복조치가 전 세계에 퍼지자 IPI회장 알란 르넬리우스는 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항의전문을 보내왔다.

**박대통령에게 보낸 IPI 항의전문**

정부권한으로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신문에 대해 전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언론법을 IPI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한다. 한국의 신문들이 책임 있고 정확한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음에 비추어 IPI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각별한 우려를 갖는 바이다.

IPI는 정치성을 띤 언론법과 법적 규제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려는 기교는 독재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 항상 쓰는 수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가 그와 같은 버릇을 멀리하고 한국 언론계에 완전한 자유를 회복시키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

국회본회의는 연 2일째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특정신문에 대한 보복조치를 신랄하게 추궁했다. 여야의원 모두는 졸렬한 보복조치의 즉각 중지를 추궁했다. 이렇게 언론계, 국민, IPI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당황한 정부는 9월 4일의 국무회의에서 언론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건을 취소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 특별담화 요지**

국회의 결정을 거쳐 합법절차로 공포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탄 법과 마찬가지로 국법으로 확립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법의 충실한 실시와 운영의 묘를 살려 모처럼 우리 국가가 여야 협조로써 이룩한 법정신을 살리고 나아가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나는 오늘 정부가 취한 몇 가지 지나친 조치들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언론인들도 언론의 자유를 표방한 지나친 태도를 시정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언론인들은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기에 앞서 먼저 이 법의 시행과 준법에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에 투위는 보복조치의 철회는 환영하지만 언론윤리위원회법도 즉각 철폐하라고 추궁하였다. 아울러 법안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 제4절

## 언론법시행령 보류

## 1. 언론과 정부의 협상 추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과 이에 대한 언론계의 강한 반발, 이어진 정부의 언론계에 대한 보복조치 추진 등으로 언론계와 정부 사이는 일촉즉발의 극한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보복조치가 발표되자 투위, 편집인협회, 기자협회는 전국 언론인들의 총궐기를 호소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을 숙의, 정부의 악법 철폐를 기어코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런 즈음 그동안 자주 회합해온 투위 상임위원회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싼 정부 측의 타협책이 은밀하게 제기되었다. 투위 내의 선배 언론인 몇명과 정부 측 인사, 청와대 측 인사 등이 막후에서 비공식 접촉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9월 4일, IPI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김성곤 동양통신 사장(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유봉영 투위위원장, 고재욱 부위원장을 불러 3자 회합을 열고, 언론법 과동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과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이 김 의원으로 하여금 투위 측의 의중을 타진하는 등 정부와 언론계의 중간조정을 부탁했다는 설도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정부는 돌연 반대 신문사에 대한 보복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사태가 급했기 때문에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갔다.

이날 밤 김성곤 의원은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방문,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언론계의 대립 그리고 언론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담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으로부터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가운데 언론계가 정부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주는 성의를 보여준다면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면담소감이 투위 측에 전달되었다.

이후 막후교섭은 급진전되어 9월 6일, 김성곤 의원 주선으로 언론계에서 유봉영 투위위원장, 고재욱 부위원장, 정부 측으로는 홍종철 공보부 장관, 이탁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동했다. 연락은 동양통신 편집국 부국장이며 투위 대표인 김규환 IPI 사무국장이 맡았다.

## 2. 건의서 채택과 제출

회합에서 정부 측은 언론계가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터이니 정부는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정부에 제출해주면 그 각서를 갖고 언론계 대표와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할 수 있게 주선하겠다고 제의했다.

9월 5일, 긴급 소집된 투위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제안 내용이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는 유봉영, 고재욱, 홍종인 투위 정·부위원장, 최석채, 김규환, 김광섭 위원, 이강현·이환의 기자협회 대표, 박홍서·엄기형 투위 간사 등 10명이었다. 오전 회의는 법 시행 '보류'를 요청하는 '각서' 제출의 형식이 언론계의 위신과 악법철폐주장 명분에 위배된다고 해서 격론을 벌였다.

하오에도 격론이 벌어져 일부 대표가 퇴장하기도 했다. 쟁점은 첫째, 악법의 '철폐'가 아닌 '보류'라는 용어를 투위 측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냐는 점, 둘째, '각서'는 아니나 '건의서'를 내놓고 회담성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언론계의 사기에 미칠 영향 등이었다.

그러나 원로언론인들의 진지한 노력이 주효, 지리산지구를 시찰하기 위해 내려간 박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대표를 유성으로 파견기로 했다. 대표는 유봉영 투위 위원장, 고재욱, 홍종인 부위원장, 최석채(편집 대표), 이환의(기협 대표), 김규환(IPI 사무국장) 등 6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밤 9시 야간열차편

으로 출발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종철 공보부 장관, 김성곤 의원이 동행기로 했다. 대표들은 출발에 앞서 '제2의 건의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내용과 용어 문제로 완성하지 못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문맥을 놓고 토론을 거듭했다. 이 건의서가 완성된 것은 유성의 호텔에 도착, 밤을 새운 새벽 4시경이었다. 어렵게 완성된 제2의 건의서는 다음과 같다.

#### 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제2의 건의서

저희들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국언론인대회의 이름으로 채택된 건의문을 각하께 올린 바 있습니다.

9월 7일 동 위원회 상임위는 그동안의 정부와 언론계와의 대립을 하루 바빠 완화시키고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긴급(緊切)하다는 견지에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재차 건의하여 각하의 영단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민주언론의 본질적 성격으로 볼 때 그 육성발전은 오직 자율규제의 방안이 있을 뿐이고 언론윤리위원회법은 결국 철폐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주장에는 하등 변화가 없사오나 당면한 문제해결의 단서로는 우선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나이다.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하여 설치된 기존 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해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인 스스로가 충분히 인식하고 동 위원회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지난번 언론관계단체들은 자율적 규제의 강화책을 채택하고 이에 입각하여 신문윤리위원회 회칙까지 개정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강화된 자율적인 윤리기관이 법률에 의한 타율적 언론윤리위원회법에 규정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국가사회의 안정과 국가이익의 옹호를 강조할 입장에 있으므로 윤리강령 및 동 실천요강의 미흡점을 가능한 방법으로 충분히 보충토록 검토할 것을 아울러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대소고처에서 이 나라 민주언론의 발전을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보류하시와 자율적인 신문윤리위를 강화함으로써 책임 있고 공정한 언론이

이 나라에 이룩되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삼가 건의하나이다.

### 3. 언론계 대표와 대통령 회담

마침내 9월 8일 오전 9시 15분, 유성 만년장호텔 201호에서 투위 대표 6명은 폭 40cm, 길이 1m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박 대통령과 대좌했다. 먼저 유봉영 투위 위원장이 언론계 대표가 야행하여 대통령을 찾아뵙게 된 취지를 설명한 후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어 고재욱, 홍종인 부위원장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의 강제시행으로 정부와 국민이 더 이상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취지를 설명하였다.

다음 최석채 편집대표가 건의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민주언론의 본질상 자율규제방안이 있을 뿐, 언론윤리위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폐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우선 법시행의 보류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기존 신문윤리위원회의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언론계에 선 보장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미 회칙도 개정했다.

둘째, 보장된 자율적 윤리기구는 법에 의한 타율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사회의 안정과 국익옹호의 입장에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의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완하겠다. 끝으로 신문윤리위원회의 강화로 책임 있고 공정한 언론이 이룩되도록 할 터이니 언론발전을 위해 언론법의 시행을 보류해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환의 기협대표는 일본의 안보투쟁 사태를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한 다음 1,000여 국내기자들은 상업주의적 경향으로 흐르는 우리 신문기업주의 비위를 거슬러가면서까지 기자 본연의 자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6·3사태 후 우리 기자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하려고 하던 차에 정부의 강제규제가 우리를 묶으려 하고 있다. 나라가 어지럽고 주위가 시끄러울 때 백성은 스스로 슬기로워질 수 없다. 대통령의 영단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철폐를 앙청한다고 열정적으로 악법 철

폐와 언론계의 자율규제강화방안 지지를 요청하였다.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언론관을 펴며 냉담한 표정으로 일관했으나 언론계 대표들의 말을 듣고 나더니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 언론계 대표들은 즉석에서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으로부터 '상경해서 선처하겠다'는 말을 듣고 회담은 끝났다. 이른바 악법반대투쟁의 유성회담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 4. 언론윤리위법의 시행 보류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동법이 보류되기까지 38일 동안 언론계는 안팎으로 고역을 치러야 했다. 밖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압력을 받아야 했고, 안으로는 일부 발행인들이 자의견 타의견 간에 하나 둘씩 투위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언론은 사회의 목탁임을 자부,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정의감으로 충만한 언론인들은 열정적으로 언론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언론법의 법제화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 저항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대한일보를 비롯한 전국 12개 신문사는 언론법의 부당성을 사실, 논설 등의 형식을 빌어 고발하기 무려 167회에 달했다. 아울러 전 언론인은 신문이 스스로 규제하는 방법만이 올바른 언론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지를 강력히 폈다.

유성회담 후 상경한 박 대통령은 정부·여당과 협의 끝에 9월 9일 정부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법 시행보류에 즈음하여 청와대는 담화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언론법 시행보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언론윤리위원회법의 궁극적 입법취지가 언론의 자율책임의 강조에 있었던 만큼 언론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느껴 그 자율적 규제책임을 다할 결의가 있다면 우리 언론인들에게 다시 자율적 규제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성에서 언론계 대표들과 만나본 나의 감상은 그들의 반성과 결의가 어느 때보다 뚜렷함에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인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그 자율적 규제책임을 다할 것인가의 구체적 결의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공보부장관에게 언론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언론법 시행보류담화에 대하여 유봉영 투위 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언론법 시행을 전면 보류한데 대하여 본인은 투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 동법 시행의 보류가 철폐를 전제한 것임을 확신하고 박 대통령의 영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언론계 사이의 심각한 대립을 해소하고 국가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언론인들은 언론자유 수호는 물론 스스로 다짐한 자율규제강화에 일층 노력할 것을 재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언론법 철폐 투위는 해체를 결의한 성명에서 '우리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에서는 9월 10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체할 것을 선언한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언론윤리위원회가 통과된 이래 38일간의 파란을 회고하면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 이번 투쟁이 이제 사실상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한 박 대통령의 영단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투쟁과정에서 언론인들이 부동의 신념으로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끝까지 목적달성에 매진해온 것은 한국 언론인의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는 것을 명기하고 더욱 금후 전체 언론인들이 총단결하여 새로운 태세를 갖출 것을 다짐한다. 이제 우리에게 부과된 자율적 규제의 책임이 중차대함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쓰라린 시련이 없기를 기약하면서 전 투쟁과정을 통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보류조치로써 언론자유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위헌적이며 비민주적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조치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믿어 정부의 다음 조치에 기대하려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와 언론계 쌍방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냉정을 되찾기 위해 본 기자회견 안에 설치된 악법철폐투쟁위원회를 10일자로 해체하고 이를 보도·자유 특별위원회로 개편하여 금후의 사태추이에 대처케 하였다. 이제 우리는 기자회견 창립의 본 취지로 돌아가 1천여 가입회원들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언론법 시행 보류조치는 국내외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국내 언론계는 물론,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국민과 정치인들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또한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귀추를 주목해 오던 미국무성은 ‘언론법의 시행보류와 언론법 반대투위의 해체보도는 좋은 사태진전으로 환영한다. 정부와 언론의 이번 조치가 신문의 자유를 유지하는데 있어 쌍방에게 만족을 주는 좋은 스타트가 될 것을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과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IPI도 ‘한국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전문을 보내왔다.

6·4 언론법 파동은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집념과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언론인 간의 역사적 대결이었다. 이 법은 박 정권 집권 중에 언론계의 폐기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박 정권은 그대로 거머쥐고 있었다. 이 법이 폐기된 것은 박 정권이 막을 내린 뒤인 1980년 12월 26일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였다.